

## [ 요약본 ]

# 비송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발행일 : 2026. 5. 2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승민

사법정책연구원은 2026. 5. 27. 「비송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요약본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위 연구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연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에는 각주와 참고문헌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본 요약본이 아니라 연구보고서의 해당 페이지를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1장 서론

비송(非訟)은 소송과 대비해 사권(私權)의 발생·변경·소멸에 국가가 후견적으로 관여하는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송과 비송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준용을 받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비송사건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고 이해되어 왔으나, 현대 사회가 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회사와 법인을 둘러싼 비송사건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심(對審)적 성격을 가진 비송사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송사건 재판절차 일반을 규율해야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총칙은 제정 이래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각칙은 잦은 개정으로 여러 조문이 삭제되고, 또 신설되면서 체계 정합성을 상실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변화된 사회현상과 제도를 수용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비송절차를 연구해 우리 비송절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비송사건절차법의 전반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제2장 비송사건절차법의 개관

### 제1절 비송사건의 개요

비송사건은 전통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사권의 발생·변경·소멸에 법원이 후견적으로 관여하는 절차로 이해되어 왔다. 소송사건과 비교해서는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 심리 비공개, 원칙, 기판력의 결여, 기속력 제한, 간이·신속주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등

대심적·쟁송적 성격을 가지는 비송사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비송사건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법률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제2절 비송사건절차법의 연혁

우리 비송사건절차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 법률은 사실상 일제강점기에 쓰이던 일본의 구 비송사건절차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제정 이후 총 27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대부분 상법이나 신탁법 등 개별 법률 개정에 따른 수동적인 개정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비송사건의 재판절차 일반을 규율하는 총칙은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국회에 발의되었던 몇 개의 일부개정안들도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 제3절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개별법 개정에 따라 조문들이 무질서하게 추가 및 삭제되면서 법률의 체계정합성이 상실되었다. ② 현대 사회의 복잡한 비송 분쟁을 처리하기에 총칙 규정이 현저히 미흡하다. ③ 상법, 신탁법 등 개별 법률에 새로운 비송사건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비송사건절차법에 해당 재판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입법의 공백이 존재한다. ④ 세부적인 재판절차를 보완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대법원규칙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다.

비송사건절차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하도록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을 강화하고 직권탐지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총칙 규정을 대폭 정비하여야 한다. 각칙 부분은 먼저, 현행법에 방치된 여러 각칙의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율해야 할 비송사건과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다른 법률로 이관할 사건을 정비해 편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법률에 규정된 비송사건 중 쟁송적 성격이 강한 일부 상사비송사건(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사건 등)은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처분과 같은 소송절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제3장 해외 주요나라의 비송절차 개요 및 입법적 동향

#### 제1절 독일

독일은 2009년 기존의 비송사건절차법(FGG)을 전면 개정하여 가사사건과 비송사건절차를 단일 법전으로 통합한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법률(FamFG)’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흩어져 있던 관련 절차를 체계화하고, 절차에 참여하는 ‘관계인(Beteiligte)’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문청구권 등 절차적 보장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비송사건의 특징인 직권탐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관계인에게 사실조사 협력의무를 부과하여 그 한계를 보완하였으며, 화해·조정 제도와 비송절차 내 임시처분(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무제한적이던 불복절차를 허가항고 제도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를 현대화하였다.

#### 제2절 일본

일본은 오랜 기간 실체법에 근거를 둔 개별 비송사건들을 해당 법률로 이관하는 작업을 거친 후, 2011년 새로운 ‘비송사건절차법’ 제정하였다. 신법은 당사자 외에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 제3자의 ‘이해관계 참가’ 제도를 신설하고, 조서 작성 의무화 및 기록 열람·복사권을 명문화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

대하였다. 또한, 충실한 심리를 위해 민사소송법상의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서증, 검증 등 증거조사 방법을 폭넓게 준용하였으며, 처분권주의를 일부 수용하여 신청의 취하와 화해 제도를 명문화하였다. 나아가 중국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기간 제한이 있는 ‘즉시항고’로 일원화하였다.

#### 제3절 프랑스

프랑스는 비송사건을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 없이 민사소송법전(CPC) 내에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다른 주요나라의 비송절차와 유사하게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또한, 심리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며, 변론 없이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공공질서와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검사가 비송절차 관련 통지를 수령하고, 변론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점이 다른 나라의 비송절차와는 큰 차이점이다.

#### 제4절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2003년 새로운 비송사건절차법을 제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신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과 달리 비송재판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구술변론을 개시할 수 있는 제한적 구술심리주의를 택한 점이다. 또한, 유럽인권협약(ECHR)의 정신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청문권,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며, 신청 취하나 화해를 허용하여 처분권주의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 제5절 미국

미국은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비송절차 일반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사

법체계 내에서 비송사건은 유언 검인, 후견, 파산, 상표권 침해에 의한 압수명령, 감청영장(FISA) 등 비쟁송적 내지는 편면적 절차(ex parte proceedings)를 비송절차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각 주(State) 법원 또는 연방법원의 관할 하에 개별 법률에 따라 다루어진다. 최근에는 연방법원이 이러한 대립 당사자가 없는 비쟁송사건을 다루는 것이 미국 헌법 제3조가 규정한 연방 사법권('case or controversy' 요건)의 범위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존재한다.

## 제4장 비송사건절차법의 정비 및 비송절차의 개선방안

### 제1절 총칙 규정의 정비

비송사건절차법 총칙은 각칙과 개별법에 산재한 비송사건의 재판절차를 규율할 일반법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현행법은 전문화·복잡화된 현대사회의 비송사건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총칙 규정만을 두고 있다. 해외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참조해 우리도 비송사건 일반에 적용될 재판절차의 기본원칙과 절차보장체계를 총칙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총칙에 관한 구체적 개정안

#### 1. 절차적 권리 및 참여권 강화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참가' 및 '이해관계참가'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를 위하고, 절차의 신속·간이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정당사자'제도 역시 비송절차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록

열람·복사권 역시 당사자의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명문의 규정을 두어 그 절차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 2. 재판제도의 현대화 및 전문성 제고

복잡화된 비송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변호사대리 원칙'을 도입(단, 1심 단독사건은 제외)하고,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리의 전문성과 편의를 높이하고자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의 재판편의를 위해 '영상재판제도'도 비송절차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 3. 직권탐지주의의 한계 보완

법원은 직권조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거조사 방법도 현행 인증과 감정뿐만 아니라,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증거조사 방법의 확대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사실인정의 필요성, 증거의 성질, 증거조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증거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 또한 필요하다.

#### 4. 절차 종료 방법의 다양화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1심 종국결정 전까지 '신청의 취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비송사건에 있어서 종국결정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종국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처분 가능한 사적 권리에 대해서는 '화해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에 관한 근거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5. 불복절차의 일원화

현행 비송사건의 중국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인 통상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현행 통상항고를 폐지하고, 불복기간을 2주로 제한하는 ‘즉시항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판례를 통해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재판의 취소·변경 제도 및 확정된 중국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인 ‘준재심’ 절차 역시 절차의 명확화를 위해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각칙 규정의 정비

### 1. 입법 공백의 해소

실체법에 새로운 비송사건이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비송사건절차법에 그 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신탁법상 수탁자의 보수 증감 결정사건, 민법상 유치물에 의한 변제충당 허가사건, 상법상 지배주주·소수주주의 주식매도·매수 청구 시 매매가액 산정에 관한 사건 등에 관한 재판절차를 시급히 각칙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등기관 및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역시 관할 규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 2. 전반적인 편제의 재정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송사건에 속하지 않는 행정적 공시절차인 ‘등기’에 관한 사건은 관련 개별법으로 이관해야 하고, 대표적인 비송사건인 ‘공시최고’ 사건은 민사소송법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율해야 한다.

### 3. 과태료 사건의 적용 범위의 명확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과태료 사건의

일반법으로 작용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그 적용범위가 매우 축소되었다. 같은 금전벌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가 이원화되었음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은 그 적용대상 사건이 법문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법률 적용범위의 명확화 및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의 확대 차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 과태료 편에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과태료 사건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4. 상사비송사건과 가처분 사건의 절차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회사의 경영권 분쟁은 그 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분쟁 해결절차도 복잡해 이해관계인들은 분쟁해결을 위해 비송절차뿐만 아니라,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소송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특정사건을 비송 또는 소송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함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이 분쟁해결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상사비송사건은 매우 쟁송적인 성질을 가지고, 법원이 신청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집행력이 필요함에도 비송사건의 한계로 말미암아 결정의 이행력이 보장되지 않던 회사 보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허가사건 및 회계장부 열람 및 재산상태 검사에 관한 허가사건은 전향적으로 소송절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비송사건절차법과 상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 제5장 결론

현대사회에서 비송사건은 단순한 권리 확인을 넘어 복잡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고분쟁성 사건을 다루는 중요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은 과거 일본의 구법을 답습한 이래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적 공백이 방치되어 있고, 현대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송절차 전반의 개선을 목표로 실무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비송절차법과 그 운영 실무를 조사·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필요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계기로 비송절차의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개시되고, 그 과정에서 소송관계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